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00510호

시행일자 2023. 4. 1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백신(노바백스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291(2023.4.14.)

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 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 허가사항\*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지(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-2186호, '23.4.13) 받았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.

\*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: 노바백스(9→12개월)( '23.3.21.)

○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('23.4.13., 식약처)

제품명	유효기간 연장	제조번호	당초 유효기한	연장 유효기한
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	9 → 12개월	ND0222010	2023-04-20	2023-07-20
		ND0222011	2023-05-03	2023-08-03

4. 다만,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(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)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, 4.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 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노바백스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.

※ 붙임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